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8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김민전 · 최수진 · 조배숙
인요한 · 서천호 · 박수영
서지영 · 조경태 · 장동혁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 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횡령·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는 모의·실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큼. 결국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치밀한 은폐 노력 덕분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도 지극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인들에게 범행 은폐의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

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2 중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형법」 제123조의 죄. 다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형법」 제356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그 미수범·교사범 또는 중범의 죄.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u>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u><신 설></u>	1. <u>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u>
<u><신 설></u>	2. 「형법」 제123조의 죄. 다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u><신 설></u>	3. 「형법」 제356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그 미수범 · 교사범 또는 중범의 죄.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

	<u>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	---------------------------------